

철도사고조사 중간보고서

한국철도공사

영동선 백산역 구내

제3383열차

열차탈선

2017년 10월 17일(화) 12시 35분경



2018. . .



항공 ·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조사보고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사고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제25조에 따라 작성되었다.

같은 법률 제1조에서 「철도사고 조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철도사고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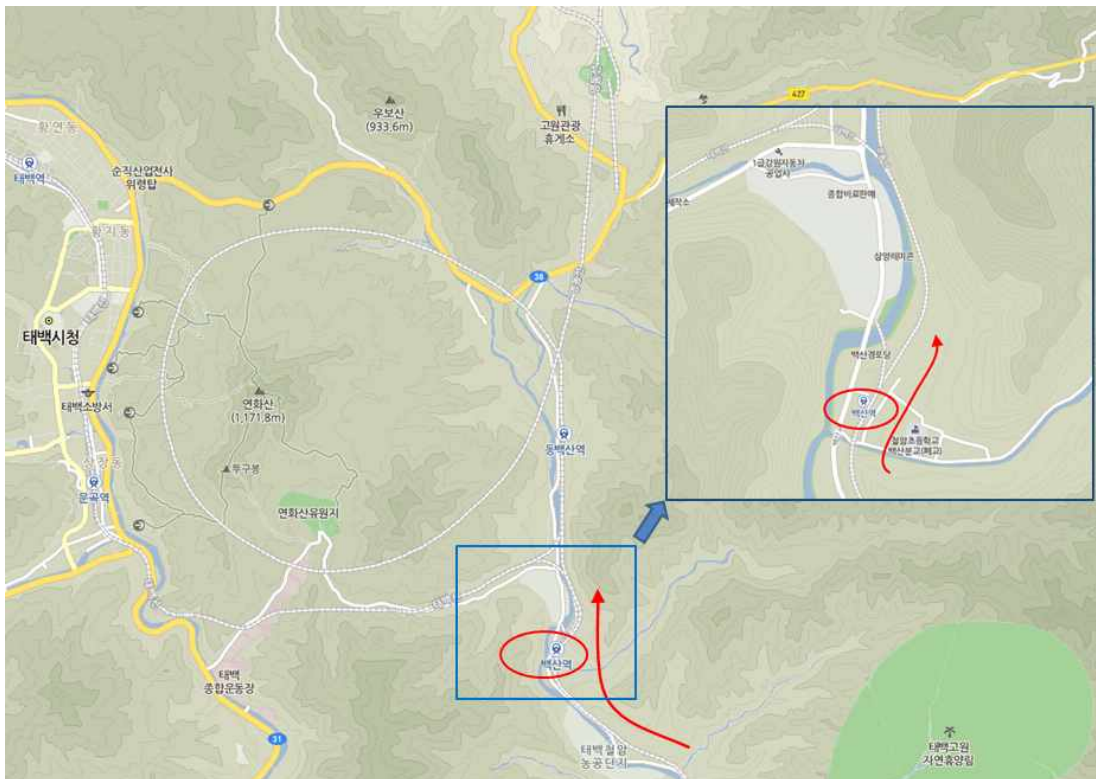
또한, 제30조에 따라 사고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 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수행되어야 하고,

제32조에서 “위원회에 진술·증언·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사람은 이를 이유로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사보고서는 철도분야의 안전을 증진시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한국철도공사 영동선 백산역 구내 화물열차 탈선사고

- 운영기관 : 한국철도공사
- 운행노선 : 영동선
- 발생장소 : 영동선 백산역구내(영주역 기점 91.204km 지점)
- 사고열차 : 제3383열차 (기관차 2량(8523호+8540호) + 화차 16량)
- 사고유형 : 열차탈선
- 사고일시 : 2017년 10월 17일(화), 12시 35분경



[그림 1] 사고현장 개요

개요

2017년 10월 17일(화) 12:35경 한국철도공사의 제3383열차(제천조차장 08:32 → 동해 15:03, 이하 ‘사고열차’라 한다)가 백산역의 장내신호를 따라 21호 선로전환기를 9km/h의 속도로 통과하던 중 동력차 하부 대차쪽에서 이상음과 함께 좌우 흔들림이 발생하여 기관사가 열차를 비상정차하였다. 정차 후 확인결과 사고열차의 첫 번째 기관차인 8523호의 1번 축은 다른 선로(제천 방향)로 진입하였고, 2번 축과 3번 축은 진행방향 좌측으로 탈선하였다.



[그림 2] 현장 상황

1. 사실정보

1.1 사고경위

2017년 10월 17일(화) 12:35경 한국철도공사의 제3383열차(제천조차장 08:32 → 동해 15:03)가 백산역의 장내신호를 따라 21호 선로전환기를 9km/h의 속도로 통과하던 중 동력차 하부 대차쪽에서 이상음과 함께 좌우 흔들림이 발생하여 기관사가 열차를 비상 정차시켰다. 정차 후 확인결과 사고열차의 첫 번째 기관차인 8523호의 1번 축은 다른 선로로 진입하였고, 2번 축과 3번 축은 진행방향 좌측으로 탈선하였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 차량의 댐퍼와 차륜 일부가 손상되었고, 분기기 텅레일 1개가 파손되었으며 2개 열차가 약 5시간 38분 동안 운행이 중지되었다.



진행방향 우측



진행방향 좌측

[그림 3] 탈선 상태 (1번축: 제천방향, 2, 3번 축: 탈선)

1.2 피해상황

1.2.1 인명피해

이 사고열차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2.2 물적피해

이번 사고로 기관차 1량이 탈선되어 댐퍼와 차륜이 손상되어 차량분야에서 약 2,418만원, 선로분야에서 분기기 텅레일 좌측 1개 파손되어 약 95만원 등 총 2,513만원의 물적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을 받았다.

1.2.3 기타피해

이번 사고로 철암~동백산 구간 운행중지가 2017년 10월 17일 12:35~18:13까지 이었으며 무궁화 2개 열차에서 87명을 버스로 연계수송 하였다.

2. 조사 진행 현황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3. 사고 원인 및 안전 권고

이 사고 조사와 관련한 원인 및 안전권고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